

교수·학습센터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센터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·학습센터(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-CTL, 이하 “본 센터” 라 칭한다.

제2조 (위치) 본 센터는 서울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함) 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 센터는 대학에서 교수·학습 분야의 교육 개발을 통해서 이 분야의 이론 및 실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사 업

제4조 (사업내용)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대학의 교수, 학습, 봉사-학습, 창의성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
2. 지역 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
3. 교수, 학습, 봉사-학습, 창의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4. 교육 자료를 포함한 연구 성과물의 발간
5. 대학의 교수, 학습, 봉사-학습, 창의성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매체 제작 및 기자재 대여 서비스 제공
6. 그 밖의 본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3 장 구 성

제5조 (구성) 본 센터는 연구 및 교육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
2. 연구원
3. 직원

제6조 (센터장)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연구원 업무를 지휘, 통괄한다.

제7조 (연구원) 연구원은 연구 및 교육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.

제8조 (직원) 직원은 일반 행정사무, 예산집행, 매체 제작, 기자재 대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 (회계 연도)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10조 (재원 및 회계) ①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지원, 국내외 각 기관의 지원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의 재무·회계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 <2012 제7차 교무위원회>)

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교수·학습연구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